



경기도 프리랜서 대상 공정거래교육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CONTENTS



01

프리랜서 계약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02

프리랜서에 대한 불공정 계약,
어느 법에 위반되나?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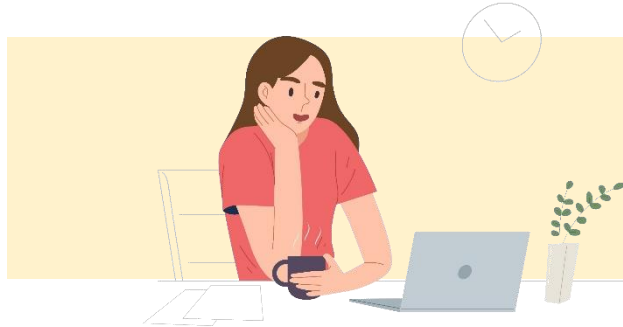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1

프리랜서 계약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프리랜서(Freelancer)



법적으로는 자유로운 개인사업자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종속되어 있는 약자

- 근로자에 비해 업무량 대비 소득은 높지만 일정하지 않고, 계약종료후에는 근로자처럼 보호 받지 못함
- 비록 사용자처럼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게 됨
➔ 그 결과 원칙상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쟁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
- 특히, 노동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경제적 약자가 우월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각종 남용행위나 부당한 작업 조건을 강요 받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프리랜서는 근무환경이 반복적, 일상적 업무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직역에서 등장: 방송, 문화, 건설, IT 산업(소프트웨어, 게임...) 등
- 프리랜서와 관련된 불공정관행들도 이들 산업분야에서 빈발하는 상황



- • 프리랜서 계약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 분야들



방송산업



만화산업



IT산업



영화산업



건설산업



• • 프리랜서 계약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 분야들

**방송산업**

- 1990년대 이후 방송콘텐츠 외주제작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형태 급증
- 취업형태가 다양화하고, 프리랜서 취업자들을 이용하는 계약형태가 활성화됨
- 프리랜서 피디 등은 프로그램 제작의 도급계약 또는 위탁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주하며 일종의 청부업자(자영업자)로 취급됨

**만화산업**

- 만화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스토리 개발, 작화 등 작업이 전과정에 걸쳐 창작성이 요구되는 분야
- 작가나 예술가, 배우 등이 주로 프리랜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 최근 만화의 보급 채널이 종전의 출판 매체에서 인터넷,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진입이 자유로워지게 되었고 그 결과 프리랜서 만화가의 비율도 급격히 증가





IT산업

- IT 분야는 프리랜서가 폭넓게 활용되는 대표적 분야

- ① 웹 일러스트레이터, 소형 웹사이트 제작에 참여하는 웹디자이너, 컨설팅, 교육을 제공하는 IT컨설턴트 등의 분야는 개인이 단독으로 창작물을 만들거나 용역을 제공하기에 적합하므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별로 도급계약을 선호
- ② 솔루션 업이나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사업이나 정규인력의 기술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분야에서 오히려 프리랜서 고급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발생
- ③ SI분야에서는 소규모의 하도급업체가 상위 도급업체로부터 용역사업을 수주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용역의 수행을 위해 프리랜서들을 영입하려는 수요가 발생



• • 프리랜서 계약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 분야들



영화산업

- 연출, 제작, 촬영, 조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협업적 환경 속에 작업을 진행하는 특징이 있음
- 작가나 연출, 조명 등 전문가를 소속회사의 상근 직원으로 채용할 여건이 안 되고, 자체 자본이 아닌 제 3 투자자에 의존하는 영화제작사들은 투입되는 인원들 역시 대부분 프리랜서에 의존하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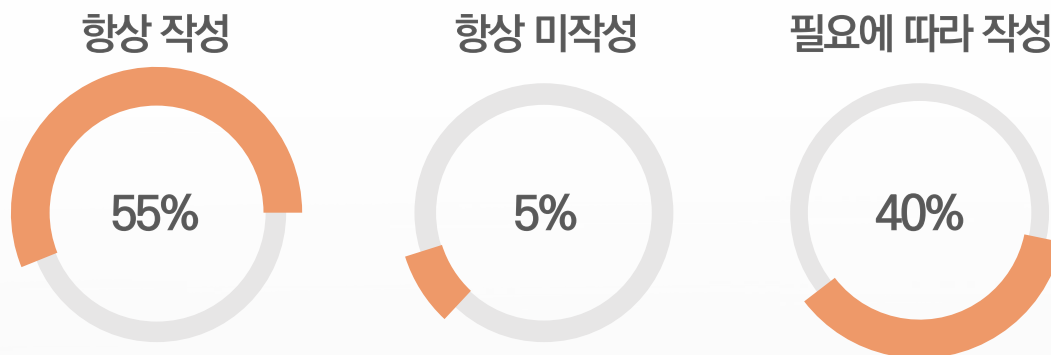
건설산업

- 건설, 공연 산업에서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특정 생산물을 완성하는 비율 증가
- 그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대신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짐



① 서면보다 구두 방식이 일반화된 계약문화

예 SW산업 프리랜서들의 업무 계약서 작성



- 특히 프리랜서 경력 1년 미만일 경우 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16%로 전체의 3배 이상

프리랜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비율도 적지만
경력이 짧을수록 이런 현상이 노골적



② 불명확한 업무 범위

- 프리랜서 도급계약에서는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명시한 계약서가 드문 실정
- 과업의 변경 및 추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짐

③ 계약의 미이행

- 소위 '을'의 입장에 처해 있는 프리랜서로서는 거래상대방이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움

④ 발주자에 의한 일방적 계약 해석

- 계약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 및 분쟁조정기구 활용 등을 통해 공정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발주자 일방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음



⑤ 발주자의 일방적 해지 권한

-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 및 그 해당 여부를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판단토록 하는 계약 조항이 많음

⑥ 지식재산권의 침해

- 프리랜서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인 프리랜서의 지식재산권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2

**프리랜서에 대한 불공정 계약,
어느 법에 위반되나?**

거래상 지위남용



현행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신법 제45조 제1항 6호

-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대기업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대금의 지급지연, 부당한 감액요청, 현저히 낮은 대가의 거래요청 등 대금 관련 불이익제공행위가 주를 이루며, 기타 기술편취 등 저작권의 침해 행위도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



구속조건부거래

현행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신법 제45조 제1항 7호

-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
- 단순히 프리랜서의 사업지역이나 거점을 정하는 경우까지 위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엄격한 지역제한이나 지역 외 사업활동 금지는 문제될 수 있음



경쟁사업자 배제



현행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신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프리랜서를 이용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됨



거래강제

현행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신법 제45조 제1항 4호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 거래강제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프리랜서가 원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끼워 팔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거래대금의 지연지급, 거래량 감소 및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들이 문제됨



사업활동의 방해



현행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신법 제45조 제1항 8호

프리랜서가 납품한 목적물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 받아 도용

경쟁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활용

프리랜서가 참여하는 시장에 진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로 문제될 수 있음





- 프리랜서 계약상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 위탁자와 프리랜서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힘의 불균형 문제를 포괄하지는 못함

실거래에 만연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마련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주된 의무사항

의무사항	개요
서면의 교부 (제3조)	원사업자는 발주시에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지불기일 및 지불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
서류의 작성·보존 (제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을 한 경우는 급부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음
하도급대금지급 (제1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하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내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으로 정할 의무가 있음
지연이자 지불 (제13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지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일수에 따라 당해 미지불액에 20%를 곱한 액의 지연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있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주된 금지사항

금지사항	개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제4조)	동종 또는 유사품의 가격 또는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
수량거부 등 금지(제8조)	주문한 상품 등의 수량을 거부하는 것
부당한 반품금지(제10조)	수취한 물품 등을 반품하는 것
하도급대금의 감액금지(제11조)	사전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하도급대금지불지연금지 (제13조 제1항)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한 지불기일까지 지불하지 않는 것
할인 곤란한 어음교부의 금지 (제13조제6항)	일반 금융기관에서 할인 받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음을 교부하는 것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제12조)	원사업자가 지정한 물품, 용역을 강제적으로 구입, 이용 시키는 것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주된 금지사항

금지사항	개요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제공요청 금지 (제12조의2)	수급사업자로부터 금전, 노무의 제공 등을 강요하는 것
기술자료 제공금지(제12조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것
부당한 급부내용 변경 및 재작업 금지(제16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주문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수령 후에 재작업을 시키는 것
보복조치의 금지 (제19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 것을 이유로 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량삭감,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
유상지급원자재 등의 대가의 조기결제 금지 (제12조)	유상으로 지급한 원자재의 대가를 당해 원자재를 이용한 급부에 관계한 하도급대금지불기일보다 이른 시기에 상계하거나 지급하게 하는 것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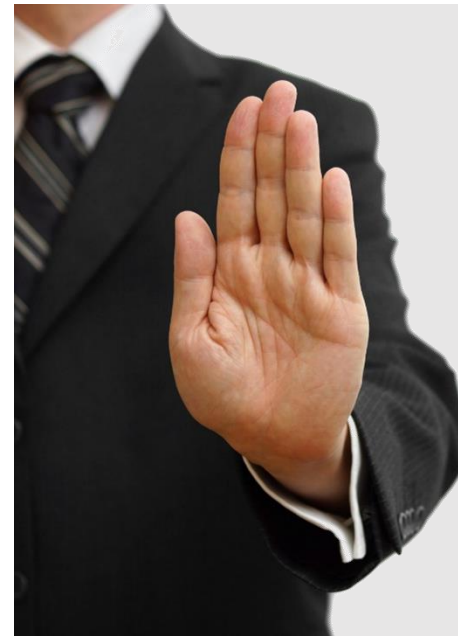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 대금 관련 불공정거래의 형태

대금 관련 불공정거래의 형태



목적물 관련 불공정거래



거래상대방 관련 불공정거래



기술 관련 불공정거래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의 거래 요청



위탁자(주로 방송사나 게임유통사업자 등 발주자)가 프리랜서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용역 제공 시 통상 지급되는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결과가 됨



적용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차별적 취급), 4호(거래상 지위남용)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의 거래 요청

법에 위반되는 경우

- ① 프리랜서가 용역 위탁 거래 시 새롭게 설비 투자와 인력을 준비 할 필요가 있는 등으로 해당 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등도 크게 증가하여 프리랜서가 대가 인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대가를 정하는 경우
- ② 프리랜서에게 단기의 납기를 설정함으로써 해당 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등도 대폭 증가하게 되어 프리랜서가 대가의 인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비용증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정하는 경우
- ③ 다량 내지 장기간의 역무의 위탁거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프리랜서에게 견적을 시켜, 그 견적에 있어서의 대가를 소량 내지 단기간 밖에 거래하지 않는 경우의 대가로 하여 정하는 경우
- ④ 특정 프리랜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프리랜서의 대가에 비해 차별적으로 낮은 대가를 정하는 경우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의 거래 요청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① 위탁자가 요청하는 대가가 프리랜서의 견적상의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프리랜서입장에서 위탁자에 의한 부당한 대금결정행위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의 요청 대가로 수탁하려고 하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 그것이 대가에 관한 협상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대가가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또한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의 위탁 거래를 요청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가 결정시 프리랜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대가 결정 방법, 다른 프리랜서의 대가에 비해 차별적인가 여부 등 결정 내용,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수급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대가의 결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대금의 감액요청

위탁자가 프리랜서에게 계약에서 정해 놓은 대금의 감액을 차후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프리랜서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프리랜서에게 줄 수 있음

위탁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변경하지 않은 채 용역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계약 이외의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대금을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됨



 적용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 하도급법 제11조



대금의 감액요청

법에 위반되는 경우

- ① 프리랜서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을 받은 후에 예산 부족 등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②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검사 기준을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탁 내용과 다르다는 것과 결함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③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사양 등의 변경, 재작업 또는 추가적인 용역의 제공을 요청한 결과, 프리랜서의 작업 양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프리랜서에 대하여 해당 작업량 증가분과 관련된 대금의 지급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에서 정한 대금 밖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④ 프리랜서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설비 투자와 인원을 준비하는 등 위탁자에 대한 용역 제공의 준비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용역의 일부 위탁을 취소하고, 계약에서 정한 대금에서 위탁 거래 감소분에 관련된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대금의 감액요청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① 위탁자가 요청하는 대가가 프리랜서의 견적상의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프리랜서입장에서 위탁자에 의한 부당한 대금결정행위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의 요청 대가로 수탁하려고 하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 그것이 대가에 관한 협상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대가가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의 위탁 거래를 요청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가 결정시 프리랜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대가 결정 방법, 다른 프리랜서의 대가에 비해 차별적인가 여부 등 결정 내용,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수급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대가의 결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대금의 지급 지연

위탁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대금에 대해
프리랜서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은 대금의 지급지연행위는 위탁자 측의 수지 악화 및
내부 절차의 지연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프리랜서에 줄 수 있음



적용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 하도급법 제13조



대금의 지급 지연

법에 위반되는 경우

- ① 회사의 지급절차의 지연 등을 이유로 하여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② 용역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서 용역의 성과물의 제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과물의 검수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③ 용역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서 대금은 해당 성과물을 위탁자가 실제로 사용한 후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경우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해당 성과물의 사용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크게 지연시키고,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을 경우



대금의 지급 지연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❶ 만기일이 길게 설정되는 경우라고 해도 대금에 대해 만기일까지 프리랜서측의 자금 조달 비용을 감안한 대가로 협상을 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프리랜서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되지 않음



목적물의 재작업 요청

위탁자가 프리랜서에게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위탁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부당하게 불이익을 프리랜서에게 주기 쉬워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음



적용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



목적물의 재작업 요청

법에 위반되는 경우

- ①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거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사양 등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리랜서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 ②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용역의 내용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받은 후에 프리랜서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 ③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검사 기준을 자의적으로 엄격히 적용하여 위탁 내용과 다르다거나 결함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프리랜서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 ④ 프리랜서가 위탁자에게 사양 내지 검사 기준의 명확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사양 등과 다르다거나 결함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프리랜서에게 재작업 시키는 경우



목적물의 재작업 요청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1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위탁시점에 결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2 재작업을 위해 통상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등 프리랜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의 취소 또는 제작물의 수령거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에 따라 제작되고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제작물의 완성 후에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것은 재사용이나 달리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프리랜서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됨



적용 규정

하도급법 제8조



발주의 취소 또는 제작물의 수령거부

법에 위반되는 경우

- ①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②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③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⑥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⑦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발주의 취소 또는 제작물의 수령거부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1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 수령의무 없음
- 2 수급사업자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함
-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함
- 4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를 상당동안 지연하는 등으로 기간 내에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함



부당반품

위탁자의 발주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목적물은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프리랜서에게
막대한 경제상의 불이익을 초래



부당반품

법에 위반되는 경우

-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②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⑤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상품 등의 구입 요청

- 위탁자가 프리랜서에 대하여 거래 관계를 이용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 외에 위탁자의 관계회사 및 거래처가 판매하는 상품, 용역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용역 위탁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가 됨



적용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호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상품 등의 구입 요청

법에 위반되는 경우

- ① 위탁 거래 담당자 등의 용역의 위탁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 ② 프리랜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 ③ 구입 의사가 없다는 표명이 있는 경우 또는 그 표명이 없어도 명백하게 구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재차 구매를 요청하거나 불필요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송부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유통업자가 상품납품업체에 협찬금 등의 부담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비용 부담

납품상품의
판매 촉진



프리랜서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음

법 위반이 되지 않음



목적물에 관한 권리 등의 일방적 취급



위탁자

- 일방적으로 수탁자의 권리를 자기에게 양도(사용권을 포함) 시킴
- 해당 목적물, 기술 등을 용역 위탁 거래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2차 이용)을 제한



프리랜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주는 것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적용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목적물에 관한 권리 등의 일방적 취급

법에 위반되는 경우

목적물의 권리 양도

- ① 프리랜서에게 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적물이 위탁자와의 위탁 거래 과정에서 얻어진 것 또는 위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작성되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 목적물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위탁자에게 양도 시키는 경우
- ② 프리랜서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2차 이용에 따른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권 등의 권리를 위탁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이용 관리를 하는 위탁자가 프리랜서로부터 2차 이용의 요청·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 ③ 프리랜서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프리랜서가 위탁자가 제시하는 목적물 제작의 대가 이외에 해당 목적물의 2차 이용에 따른 수익 배분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목적물의 제작을 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이용을 관리하는 위탁자가 프리랜서의 2차 이용 요청·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에 관한 권리 등의 일방적 취급

법에 위반되는 경우

정보성과물 2차 이용 제한 등

- ① 프리랜서에게 권리가 발생하고 위탁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자신에게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프리랜서와 일방적으로 해당 콘텐츠의 2차 사용 수익 배분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할 경우 또는 2차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 ② 프리랜서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해당 콘텐츠가 위탁자와의 위탁 거래 과정에서 얻어진 것 또는 위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작성되어진 것을 이유로 프리랜서 대해 일방적으로 해당 콘텐츠의 2차 사용 수익 배분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할 경우 또는 2차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 ③ 프리랜서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프리랜서가 위탁자가 제시하는 콘텐츠 제작의 대가 이외에 해당 콘텐츠의 2차 이용에 따른 수익 배분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콘텐츠의 제작을 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이용을 관리하는 위탁자가 프리랜서의 2차 이용 요청·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에 관한 권리 등의 일방적 취급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콘텐츠에 관한 권리의 양도 또는 2차 이용의 제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불하고,
해당 대가를 포함한 형태로 대가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이러한 경우에도 콘텐츠에 관한 권리의 양도 등에 대한 대가가 부당하게 낮은 경우와
콘텐츠에 관한 권리의 양도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등 프리랜서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음



기술자료 제공 강요 행위

위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프리랜서의 목적물 관련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해당 기술자료를 자기나 제3자에게
유용하는 경우가 있음



적용 규정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5조



기술자료 제공 강요 행위

법에 위반되는 경우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